##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79

발의연월일: 2021. 6. 18.

발 의 자: 박주민·기동민·김민기

김병기 · 김영배 · 김진표

권인숙・설 훈・송기헌

양이원영 · 오영환 · 유정주

이수진・장경태・정춘숙

최기상 · 홍영표 의위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여군 중사에게 가해졌던 성범죄도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음.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랜 기간 시행착 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 전단 중 "이송하되,"를 ","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제11조의2에 정한 바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제1항 중 "계속"을 "계속(繫屬)"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를 "군사법원의"로, "군사법원규칙을"을 "사항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 다.

-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 2. 제4조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관 1명
-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판사 3명
- 3.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1명
-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및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 다.

-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군사법원 관할관)"을 "(군사법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할관을"을 "군사법원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를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
-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 제목 "(관할관의 권한)"을 "(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 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 ②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 사를 겸할 수 있다.
- 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군사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군사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를 전담하여 재판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군사법원"을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상고사건에"를 "상고사건 및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고등군사법원의"를 "고등법원의"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고등군사법원의"를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로, "법률에"를 "다른 법률에"로, "고등군사법원의"를 "고등법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제11조의 제목 중 "보통군사법원의"를 "군사법원의"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통군사법원은"을 "군사법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

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 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재판권의 예외)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정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사망(자살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2.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건
-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한다.
-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 또는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

-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
- ③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 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사건,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군 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서로"를 "사건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이송"을 "심리분리"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련사건이"를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5조 중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直近)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은 군검사의"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법원은"을 "중앙지역군

사법원은"으로,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에"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대의"를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사법원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은"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청구)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 법원이 없을 때
-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 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제2항 중 "재판관, 군검사 및 변호인은"을 "재판관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 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군판사 1명
-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4.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를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

- 의 파견·겸임·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국방부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4조의 제목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을 "(군판사의 임용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관은"을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으로, "자격을 갖춘 영관급"을 "직(職)에 있던 45세"로, "장교"를 "사람"으로, "관할관이 임명한다"를 "임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학식이 충분한"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를 "군법무관인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군법무관·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한 사람

-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군판사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 ④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 1.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이나 군인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26조(군판사의 임기·연임·정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군사법원장: 65세. 이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1조에 따른 정년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군법무관인 군판사: 56세.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법무관인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

지 아니한다.

- 제27조(군판사의 연임)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법무관인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③ 군사법원장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군법무관인 군판사에게는 「군인사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의 제목 "(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을 "(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으로 하고, 같은 조 본 문 중 "항소"를 "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재심의 심판에서 재 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를 "본인 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보칙)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을 적용한다.
  - 1. 군사법원장: 「군무원인사법」
  - 2. 군법무관인 군판사: 「군인사법」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정병(廷兵)을"을 "법정경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을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정병)"을 "(법정경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병은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소속된 부사관과"를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으로, "관할관이"를 "국방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병은 재판관의"를 "법정경위는 재판장의"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관할관이"를 "국방부장관이"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관할관이"를 "국방부장관이"로 한다.

제3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에의 단장으로 하여금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에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게 하여야한다.
- ⑦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정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

려하여 해당 사건을 군수사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이 또는 민군합동 수사기관을 설치하여 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 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사망(자살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2. 군수사심의위원회가 군수사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권고한 경우
- 3.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건
- ⑧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 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被疑者)인 사건
-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 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 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의 고등검찰부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 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

- 로 또는 해당 부대 보통검찰부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 ①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 ①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군수사심의위원회) 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1.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
  - 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3.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 4. 제36조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권고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7명 이상의 찬 성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한다.
  - ③ 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

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 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 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4명
-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4명
- 4.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 ⑤ 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추천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임명·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지"를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판집행의"를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단서 중 "참모총장만을"을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로한다.

제39조 중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를 "일반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를 "군검찰사무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

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를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로, "군검사를"을 "상급자의"로, "감독한다"를 "감독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 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를 "국방부검찰단의"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① 군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호 중 "군사경찰과의"를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을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을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으로 한다. 제44조제2호 중 "「군사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를 "「군사보안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을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제47조의 제목 중 "군검찰부"를 "군검찰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검찰부에"를 "군검찰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서기의 임명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를 "검찰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 한다.

제48조제3호 중 "후견인인"을 "후견감독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

호 중 "관할관"을 "군검사"로, "군검사"를 "검사, 군사법경찰관"으로, "군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조사심리에"를 "조사, 심리에"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이"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회피할 의사를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를 "회피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관을 바꾸어야"를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2조제2항 단서 중 "보통군사법원은"을 "군사법원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고지하여야 한다"를 "선고한다"로 한다.

제67조의2제2항 중 "관할관은 필요에 따라"를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으로,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를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의3제1항 중 "군사경찰"을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 사경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의4제2항 중 "정병"을 "법정경위"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공판에"를 "기소한 군검사와 공판에"로 한다.

제82조제6항 중 "군판사는"을 "신문한 군판사는"으로 한다.

제93조의2제6항 중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를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에"로 한다.

제99조 중 "검찰기관에"를 "검찰부에"로 한다.

제126조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45조 중 "원심군사법원"을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3조제4항 중 "정병"을 "법정경위"로 한다.

제228조제2항 중 "관할 검찰부에"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이내에 관할 검찰단에"로 한다.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 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2조의2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 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2조의4제1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제1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보통군 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전단·제5항 및 제8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2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2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에"를 "군사법원에"로 한다.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

다.

제255조제3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60조의2제6항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경우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나 가족 포함) 의사를 존중하여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① 군검사는 전항의 경우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자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제2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4조의 제목 중 "사건보고"를 "사건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을 "피의자의 소속"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01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에"를 "고등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부대의"를 "보통검찰부의"로 한다.

제303조의 제목 중 "부대의"를 "군검찰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대의"를 "보통검찰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군사법원과"를 "고등법원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를 "고등검찰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묻고"를 "고등검찰부의 장은"으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대의"를 "보통검찰부의"로, "고등군사법원과"를 "고등법원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군사법원에"를 "고등법원에"로 한다.

제30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각각 "고등법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부대의"를 "보통검찰부의"로 하며, 같은 항후단 및 제6항 중 "부대의"를 각각 "보통검찰부의"로 한다.

제306조의2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30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각각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374조제1항 중 "그 군(軍)의 다른 보통군사법원에"를 "다른 군사법 원에"로 한다.

제378조 중 "군사법원을"을 "법원을"로 한다.

제379조를 삭제한다.

제392조제1항 본문 중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을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소속"으로,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

재지나 소속 부대를"을 "소재지를"로, "군검찰부 군검사가 그 군사법원에"를 "군사법원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에서"를 "고등법원에서"로, "고등군사법원에"를 "고등법원에"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군사법원은"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40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1조제3항 중 "원심군사법원에 보내고"를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보내고"로 한다.

제404조제1항 중 "군사법원은"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405조제1항 중 "군사법원은"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410조 본문 및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를 각각 "상소법원에"로 한다.

제413조 중 "대법원은"을 "상소법원은"으로 한다.

제4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통군사법원의"를 "군사법원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고등군사법원에"를 "고등법원에"로 한다.

제418조 중 "고등군사법원에"를 "고등법원에"로 한다.

제4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각각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420조제1항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에"를 "고등법원에"로 한다.

제421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에"를 "고등법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427조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428조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429조제1항 본문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명하는데"를 "증명하는 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5조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를 "고등법원에서"로 한다.

제436조 중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을 "관할권이 있는 다른"으로 한다.

제438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한다.

제440조 중 "고등군사법원의"를 "고등법원의"로 한다.

제4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제379조는 제외한다)을"을 "규정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으로, "재판관"은 "법관"으로, "군판사"는 "판사"로 본다.

②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항소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군사법원의"를 "고등법원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통군사법원의"를 "군사법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통군사법원이"를 "군사법원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통군사법원의"를 "군사법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통군사법원에"를 "군사법원에"로 한다.

제449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을 "원심 판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에"를 "원심법원에"로 한 다.

제453조 중 "원심군사법원에"를 "원심법원에"로 한다.

제458조제2항 중 "항고군사법원에"를 "항고법원에"로 한다.

제459조의2 단서 중 "항고군사법원은"을 "항고법원은"으로 한다.

제460조제1항 중 "항고군사법원에"를 "항고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항고군사법원은"을 "항고법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고군사법원이"를 "항고법원이"로 한다.

제462조 중 "항고군사법원은"을 "항고법원은"으로 한다.

제464조 중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를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66조 중 "부대를 관할하는"을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으로 한다.

제469조제7호 단서 중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를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로 한다.

제472조 본문 중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를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77조 단서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로 한다.

제480조제1항 중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은"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은"으로 한다.

제485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은"을 "고등법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경우에 제1심"을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이"를 "고등법원이"로 한다.

제488조제1항 중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은"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은"으로 한다.

제492조 중 "대법원의"를 "상소법원의"로 한다.

제498조제1호 본문 중 "판결이"를 "원판결이"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불리할"을 "불이익한"으로, "피고사건을"을 "피고사건에 대하여" 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를 "판결을 한다"로 한다.

제499조를 삭제한다.

제500조 중 "단서 및 제499조에"를 "단서에"로 한다.

제501조의2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은"을 "군사법원은"으로 한다.

제501조의14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15제1항 중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로, "보통군사법원에"를 "군사법원에"로 한다.

제501조의33을 삭제한다.

제503조제1항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보통군사법원에"를 "군사법원에"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로 한다.

제505조 단서 중 "소속 부대의 장의"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 모총장의"로 한다.

제513조제1항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를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를 "국방부장관이"로 한다.

제5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를 "군 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의"를 "검찰단의"로 한다.

제515조제1항 단서 중 "부대의"를 "검찰단의"로 한다.

제535조의 제목 "(관할관의 조치권)"을 "(전시 군사법원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확인은 해당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검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 사법(司法)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제1항에 따른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할하는 관할관을 둘 수 있다.
- ④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두는 고등군사 법원·보통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심판절차와 고등 검찰부와 보통검찰부의 조직, 권한 및 수사 절차, 관할관의 업무 등 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6조(준용) 군사법원에서의 국선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7년 이상 복무 중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임명할 수 있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등법원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 지를 기준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군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 군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9조 단서 중"「군사법원법」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 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을"「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 사법원"으로 한다.

③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④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참모총장"으로 한다.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13조제3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u>군사법원의 소재지</u>(제6조제1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제1지역군사법원	충청남도
제2지역군사법원	경기도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도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광역시

[별표 2]

##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제6조제2항 관련)

군사법원	관할구역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및 해외 파병지역
제1지역군사법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2지역군사법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강원도 철원군을 포함한다)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도(철원군은 제외한다)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u>&lt;단</u>	<u>다만</u>
<u>서 신설&gt;</u>	이 법 제11조의2에 정한 바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	③
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	
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	
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	
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u>이송</u>	
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	
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	
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	
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	
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	
에 영향이 없다.	,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

정의 신청) ①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신청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가져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 규칙을 정한다.
  - ②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2명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③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신 설>

	성의 신성) ①
	계속(繫屬)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	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u>군사</u>
	법원의
	<u>사항은 제4조의2에 따른</u>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u></u> <삭 제>

<삭 제>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

   위원회를
   둔다.
-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 에 관한 사항
- 2. 제4조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 의에 부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 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 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관 1

   명
-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판사 3명

제5조(군사법원의 종류) 군사법원 은 다음의 두 종류로 한다.

- 1. 고등군사법원
- 2. 보통군사법원

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 ② 보통군사법원은 별표와 같 이 설치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 3.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1명
-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 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 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 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 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 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 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 표 2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군사법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 등에 보통군사법원을 설 치할 수 있다.

-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편성 된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 교가 지휘하는 부대
- 2.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 하는 부대 또는 기관(수사기 관은 제외하며, 이하 "부대" 라 한다)
-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삭 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군사법원 관할관) ① 군사 제7조(군사법원장) ① ------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 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신 설>

태 시에는 제2항에 따른 보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군사법원장을----.
- 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 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 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
  -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

<신 설>

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 를 둔다. 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 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 군 본 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 · 감독하다.

-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 장한다.
-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 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 다.

<신 설>

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 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 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관할관의 권한) ① 고등군 제8조 (부) ① 군사법원에 부(部)

- ②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②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 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 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
- ③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 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 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 무를 감독한다.

제8조의2(성폭력범죄에 대한 전 담재판부) 군사법원장은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군사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 |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 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신 설>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 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의 죄, 「군형법」 제15장 강간 과 추행의 죄(이하 "성폭력범 죄"라 한다)를 전담하여 재판 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 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 <u>다. 이하 같다)-----상고사</u> 건 및 결정 · 명령에 대한 재항 고사건에-----.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사건 및 그 밖에 <u>법률에</u> 따라 -----<u>다른 법률에</u>-----<u>고</u> 등법원의-----

>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 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 고등법원에 둔다.

사법원은\_----

1.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 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 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 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전지역 관할지역 또는 경 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 📗 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 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 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 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 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 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 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 (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u> <u><삭 제></u>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

---. <단서 삭제>

2.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단서 삭제>

<삭 제>

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 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 을 심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1조의2(재판권의 예외)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정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 려하여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 이 아닌 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사망

     (자살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2.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그에 준하는 사건
-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 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 관할을 달리하는 여

-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 判事)에게 준용한다.
-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 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 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 또는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 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 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 로 한다.
  -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 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 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
  - ③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 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예외) -----

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 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 조에 따른 사건,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군사법 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서 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 관할할 수 없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 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 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 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군사 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사건의 이송) 관련사 제14조(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관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 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u>사건은</u>
<u>&lt;삭 제&gt;</u>

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신 설>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 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 에 계속된 경우 <u>각 군사법원에</u> <u>공통되는 직근(直近) 상급부대</u> <u>의 군사법원은 군검사의</u> 신청 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 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 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u>제</u>	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군사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
	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
	<u>할 수 있다.</u>
제	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중앙지역군사법원
	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1 <b>1</b>	 17구/기원시 권원)
세	17조(관할의 경합)
	앙지역군사법원은
	<u>0/17世/1日世上</u>

있다.

제18조(관할결정사유 변경의 효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소속 변경이나 그 밖에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성급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군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u>그 상급부대</u> 의 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 청할 수 있다.

- 1. (생략)
-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 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 럽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청을 받은 <u>군사법원은</u> 지체 없 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삭 제>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u>중앙지역군사</u>
법원에
1. (현행과 같음)
2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앙지역군사법원은</u>

<신 설>

<신 설>

- 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 (생 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 (현행 략)
  - ② 재판관, 군검사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청구) 군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 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 야 한다.
  -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 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 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 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과 같음)
- ② <u>재</u>판관은-----

-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 군사 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 명으로 구성한다.
  -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 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先 任)군판사가 된다.
  - <신 설>

- 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 관으로 한다.
-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 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 으로 한다.
  -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 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 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 명에 관한 사항
    -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 임에 관한 사항
    -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 임에 관한 사항
    -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 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

항

-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 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 항
-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 1. 군판사 1명
-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u>1</u> <u>명</u>
-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다만, 제2항제2호에 따 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심 의에만 참여한다.
- 4.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 하는 변호사 1명

-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 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 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 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 씩 추천하는 장교 3명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 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①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 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

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 이-----. <단서 삭제> 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 명하다.

- 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영관급 이상의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 부 및 각 군의 군판사를 임명 할 수 있다.
- ③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 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 의 파견ㆍ겸임ㆍ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군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 <삭 제>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 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 ·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 -----직(職)에 있던 45세-----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는 군판 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국방부로 한다.

<삭 제>

<u>심판관은</u> 다음 각 호의 <u>자격을</u> <u>사법원장은 15년 이상</u>-----

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 이 충분한 사람

<신 설>

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후 단 신설>

<신 설>

<신 설>

제25조(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 ---사람-----임용한다.
- 1. 군법무관・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 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1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 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 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 람
-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 |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는 군법 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 한다.
  - ③ 제1항에 <u>따라 임용된 군판</u> 사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 ④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 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 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 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 판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 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 으로 한다.
  - ③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 다.

-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 다.
  - 1.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이나 군인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26조(군판사의 임기·연임·정 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
    -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임기 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군사법원장: 65세. 이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1조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2. 군법무관인 군판사: 56세.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법무관인 군판사 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군판사의 연임) ① 국방부 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 <u>판관으</u>로 한다.

②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 다.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군인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 년을 적용한다.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 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 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연임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 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 의 정의)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관할관 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 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 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 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 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 된 죄
- 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 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 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u>그 등급에 따라 제</u>1항에 준한 다.
  -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

로 정한다. <삭 제>

제28조(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 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 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법무관인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u>1항 및 제2항에</u> 준한다.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계 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 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제29조(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 관의 계급)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 제30조(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 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 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 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u><신</u> 설>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 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장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를 적 용하지 아니하고, 군법무관인 군판사에게는 「군인사법」 제 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 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 무원인사법 또는 「군인사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 다.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 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직 권 면직-----본인의 의사에 따 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 무원인사법 또는 「군인사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단서 삭제>

제30조의2(보칙) 군판사의 인사관 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신 설>

제31조(직원) ① 군사법원에 서기 제31조(직원) ① ------와 정병(廷兵)을 둔다.

② (생략)

<신 설>

제32조(서기) ① 서기는 각 군 참 제32조(서기) ① -----국방부장 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관이-----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 할통합부대의 서기는 국방부장 관이 임명한다.

② (생략)

제33조(정병) ① 정병은 「군인사 제33조(법정경위) ① 법정경위는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을 적용한다.

- 1. 군사법원장: 「군무원인사 법 |
- 2. 군법무관인 군판사: 「군인 사법 🗆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 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 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법정경위를----.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소속된 부사관과 병(兵) 중에서 관할관 이 임명한다.

- ② <u>정병은 재판관의</u> 명령을 받 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 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u>관할관이</u>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35조(기사) ① 기사는 장교 또 는 군무원 중에서 <u>관할관이</u> 임 명한다.

### ② (생 략)

- 제36조(군검찰부) ① ~ ⑤ (생략)
  - ⑥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⑥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총장은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따른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검찰단의 단장으로 하여금 국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7 N H -1 -1 .1
<u>국방부장관이</u>
②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제34조(통역인) ①
<u>국방부장</u>
<u>관이</u>
<u>,</u>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기사) ①
<u>국방부장관이</u>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군검찰부)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
총장은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각 호와 같다.

-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 를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 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被疑 者)인 사건
-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 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 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 자인 사건
-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 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 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 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의 고등검찰부장은 범죄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 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해 당 부대 보통검찰부 군검사의

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보통검찰부에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⑦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정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 지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해당 사 건을 군수사기관이 아닌 수사기 관이 또는 민군합동수사기관을 설치하여 그 수사기관이 범죄 검찰부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 전할 수 있다.

⑧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6항 및 제7항 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 다.

- 1.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사망 (자살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2. 군수사심의위원회가 군수사 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이 범 죄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 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권고한 경우
- 3.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건
- ⑧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 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 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 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被疑 者)인 사건
  -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 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⑨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 자인 사건

-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의 고등검찰부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부 대 보통검찰부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 다.
- ①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6항 및 제7항 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 ①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운

<u><신 설></u>

-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의2(군수사심의위원회) 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 에 준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1.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
  - 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보
  - 3.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 법성
  - 4. 제36조 제7항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관한 권고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7명 이 상의 찬성으로 회의에 부치 는 사항
  - ② 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야 한다.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 던 사람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합인・국제기구에서 근무
   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
   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4명
-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 하는 4명
- 4.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 ⑤ 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 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추천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결 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임명·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임명·위촉된 날 부터 기산(起算)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사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제37조(군검사의 직무) 군검사는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신 설>
- 2. 군사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 감독
- 3. (생략)

<신 설>

-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저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 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 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 휘・감독한다.
-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 제 무 지휘·감독) 각 군 참모총 무 지휘·감독) ------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 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

-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 구
- 2. -----및 고등법원 재판 집행의-----
- 3. (현행과 같음)
-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 니 된다.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u>참모총장과 국방부검</u>
찰단장만을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

-----일반적으로----------. 다만, 구 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 지휘·감독한다. <단서 신설>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
·감독)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77	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u>.</u>
제4	10조( <u>군검찰사무에 대한</u> 지휘
	· 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
Ĩ	무에 관하여
_	
_	<u>상급자의</u>
_	<u>감독에 따른다</u> .
<u>(</u>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u> </u>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
<u> 3</u>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
<u>)</u>	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
i i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u>(</u>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5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
9	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
Ţ	<u>구.</u>
<u>(</u>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2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
ĭ	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7	할 수 있다.
제4	11조(군검사의 임명) ①
_	
_	
-	<u>국방부검찰단의</u>
_	

② (혂행과 같음)

② (생 략)<신 설>

-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 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 1. <u>군사경찰과의</u>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 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 에 소속된 <u>군무원으로서</u> 범 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 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 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 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भे41	조의2(군검사의 정원) ① 군
<u>검</u>	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u>	 )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il .‡€	, 도시도 기 표 이 근 단/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
	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
	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2.	
	·

부사관과 <u>군무원으로서 보안</u>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3. • 4. (생략)

-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 1. (생략)
  -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 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 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 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와 「국가보안법」, 「군사기 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 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 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
<u></u>
 3.⋅4. (현행과 같음)
세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국가</u>
보안법」 및 「군사기밀 보호
<u>법」에</u>
<u> </u>
세46조(군사법경찰리)

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 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 하다.

1.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 (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 인 병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 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3. (생략)

- 군검찰부에 검찰수사관과 검찰 서기를 둔다.
  -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② ------검찰서기는 임명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 략)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 제48조(제척의 원인)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 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 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 로 임명하는 사람
- 2.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 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 는 사람
- 3. (현행과 같음)
- 제47조(군검찰부 직원·직무) ① 제47조(군검찰단 직원·직무) ① 군검찰단에-----
  -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 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 단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2. (생략)
-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의 법정대리인이거나 <u>후견인</u> 인 경우
- 4. 5. (생략)
-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 여 <u>관할관</u>, <u>군검사</u> 또는 <u>군사</u> <u>법경찰관의</u> 직무를 수행한 경우
-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 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u>조사심리에</u> 관 여한 경우
-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② (생 략)
  - ③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 지 못할 때에는 <u>직근 상급부대</u> 의 군사법원이 결정하여야 한 다.

제56조(재판관의 경질) 제척되거 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

<u>.</u>
1. • 2. (현행과 같음)
3
독인인
4. • 5. (현행과 같음)
6
<u>군검사</u> - <u>검사, 군사법경찰관</u>
<u>사법경찰관의</u>
7
<u>조사, 심리에</u>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앙지역군사</u>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
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
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
원이
<u>&lt;삭 제&gt;</u>

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관할관 은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재판 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다고 생각할 때에는 <u>회피할 의</u> 사를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u>관할관은 제1항에 따른 보</u> 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 <u>판관을 바꾸어야</u> 한다. <신 설>

제62조(국선변호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 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 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 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 로 선정할 수 있다.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회피하여야
② <u>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u> 면으로 신청하여야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
<u>53조를 준용한다.</u>
제62조(국선변호인) ① (현행과
같음)
②
<u>군사법원은</u>

제67조(재판의 공개) ① (생 략)

-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 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생 략)
  -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 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제67조(재판의	공개)	1	(현행과
같음)			

- -----선고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현행 과 같음)
- ② 관할관은 필요에 따라 법정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 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중에서 군사 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정 외의 장소에 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 장에게 군사경찰의 파견을 요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

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8조의4(감치 등) ① (생 략)

-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정병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생 략)
  - ② 판결서에는 <u>공판에</u>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
  - ⑤ (생략)
  -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u>군판사는</u>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 ⑦ (생 략)
-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복사)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제68조의4(감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
②	제68조의4(감치 등) ① (현행과
경위	②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기소한 군검사 와 공판에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기소한 군검사 와 공판에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기소한 군검사 와 공판에	
(현행과 같음)         ②기소한 군검사         와 공판에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와 공판에	
지82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⑥	·
 ⑦ (현행과 같음)	
	⑦ (혀해고 가스)

·복사) ① ~ ⑤ (현행과 같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 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군 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 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 ⑦ (생략)

-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군검 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군검사는 <u>군사법원</u>의 허가를 받아 구속 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 감(移監)할 수 있다.
-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u>원심</u> 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 군사법원이 하여야 한다.

	口 /
(	6
	<u>중</u>
_	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
	사법원에
(	⑦ (현행과 같음)
제!	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검찰부에
제.	126조(피고인의 이감)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
_	법원을 말한다 <u>)</u>
제.	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
	정)
	<u>원심</u>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u> </u>

(گ

-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 략)
  -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 교도관, <u>정병</u>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⑤ ~ ⑧ (생 략)
-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생 략)
  -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 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u>관</u> <u>할 검찰부에</u>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3조(증인이 줄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법정</u>
경위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당한</u>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하는 이 되는 가
<u>관할 검찰단에</u>
<u> 관알 검찰난에</u>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 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 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 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 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 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 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 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 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 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 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 야 한다.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군검사는 관할 <u>보통군사</u>	<u>군사법원</u> -
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	
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	
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	
사의 청구로 관할 <u>보통군사법</u>	<u>군사법원</u>
<u>원</u>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	
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u>보통</u>	② <u>군사</u>
군사법원 군판사는 타당하다고	<u>법원</u>
인정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u>보통</u> 군사법원 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 ④・⑤ (생 략)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군검사 지 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 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 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 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③ <u>군사</u>
법원
<b>.</b>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군사법원
1 0 (원레기 기수)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저 기간)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 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 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 속하려면 지체 없이 군검사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 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 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 ② ~ ⑥ (생 략)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 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 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 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 ①
군사법원
법원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8조(구속) ①
그 z] Hì oì
<u>군사법원</u>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
<u>사법원</u>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
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
한다.

- ② (생략)
- ③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 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 ⑥ (생략)

군사법원
②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4
군사법원
5
,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 자심문) ① 제232조의2 · 제232 자심문) ① -----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 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 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 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 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 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 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 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 ③ 군사법원-----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군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 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으면 심 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④ (생 략)
- ⑤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할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⑥・⑦ (생 략)
-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⑨・⑩ (생 략)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사법원
⑥·⑦ (현행과 같음)
8
· ⑨·⑩ (현행과 같음)
세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
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
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
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
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u>보</u>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u>군</u>
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군검사의	사법원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	<u>&lt;</u> 삭 제>
에 관하여는 제23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①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	
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체포 또는 구	군사법원에
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254조(압수・수색・검증) ① 군	제254조(압수·수색·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	
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할 <u>보통군사법원</u>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 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 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 저분) ①·② (생략)
  -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 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 제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u>군사법원</u>
②
<u>군사법원</u>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
분) ①・② (현행과 같음)
3
<u>군사법원</u>
<u>.</u>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
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⑤ (생 략)

⑥ 군검사는 피해자(「군형 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u>한정한</u> 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 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신 설></u>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제 치)(생 략)

<신 설>

변호사 선임의 특례) $ (1) \sim (5) $
(현행과 같음)
6
한정한
다)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나 가족
<u>이 경우 피해</u>
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
족이나 가족 포함) 의사를 존중
하여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군검사는 전항의 경우에, 성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자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
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
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제284조(군검사의 <u>사건보고</u>) 군검 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 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u>군검</u> <u>찰부가 설치되어 있는</u>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u>보고하</u> 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이 설 치되어 있는 부대의 군검찰부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 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 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 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 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 사가 소속된 <u>부대의</u>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303조(군검사 소속 <u>부대의</u> 장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
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u>한다.</u>
제284조(군검사의 <u>사건통보</u> )
<u>ज</u> ]
<u> 의자의 소속</u>
<u>통보하여야</u>
<u>&lt;</u> 후단 삭제>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등법
원에
②
<u>보통검찰부의</u>
 ③ (현행과 같음)

- 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u>부대의</u>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 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 령하고 그 취지를 <u>고등군사</u> 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 정할 때: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u>국방부</u> <u>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u> <u>게</u> 송치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묻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 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 속 <u>부대의</u>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u>고등군사법원과</u>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장의 처리) ①
보통검찰부의
1
<u>고등법원</u>
과
<u>.</u>
2
<u>고등</u>
 검찰부의 장에게
<u>.</u>
②
<u>고등검찰부의 장은</u>
1
보통검찰부의
<u>고</u> 등법원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 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 록을 고등군사법원에 송치한 다.
-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u>고등군</u>
  <u>사법원은</u>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③ ④ (생 략)
  - ⑤ 고등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관할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
2
<u>고등법원에</u>
·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u>고등법</u> <u>원은</u>
 ② <u>고등법원은</u>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등법원은
<u>보통검찰부의</u>
<u>보통검찰부의</u> -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 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담 --보통검찰부의-----당 군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 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야 한다.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 · 복사 제한) 재정신청사 열람 · 복사 제한) -----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 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군사법 -----. ----<u>고등법원은</u>-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 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 가할 수 있다.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 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 법원은----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 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직권으로 ② 고등법원은-----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

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

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군 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 으면 <u>그</u> 군(軍)의 다른 보통군 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 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② (생략)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 소할 <u>군사법원을</u> 고지하여야 한다.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u>.</u>
(	· ③・④ (현행과 같음)
	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II•	
•	
	<u>다른 군사법원에</u>
(	② (현행과 같음)
제;	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HÌ 이 ㅇ
	<u>법원을</u>
-	<u>&lt;삭 제&gt;</u>

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 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 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 기간 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 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 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 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재지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세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
차) ①
현재지나 소속소재지를
<u>군사법원에</u>
<u>고등법원에서</u> -
고등법
<u>원에</u>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군사법원에 청구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 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하다.
- ③ ④ (생 략)
-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생 저 략)
  - 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 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 된다. 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 행된다.
-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 ② (생 략)
  -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u>군사</u>
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③・④ (현행과 같음)	
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현행
과 같음)	
2	
<u>&lt;단서 삭제&gt;</u>	

• ② (현행과 같음)

심군사법원에 보내고, 상소장을 |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보내고-----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u>군사법원은</u> 청구 허가 여 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 정지) ① 군사법원은 상소권회 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 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야 한다.

## ② (생략)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 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 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

결성) ①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② (현행과 같음)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
정지) ① 군사법원 또는 고등
법원은
<u>日七七</u>
 ⓒ (ᅯᅰᄀ 기호)
② (현행과 같음)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u>상소법원에</u>
<u>상</u>
<u>소법원에</u>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
의 통지)
- <u>상소법원은</u>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군

통군/	나법	원의	판결어	<u> 다</u>	하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	<b>구에</b>	해
당하는	는 /	사유기	- 있음	을	이유	-로
고등급	군사	법원이	<u>]</u> 항소	<u> </u>	수	있
다.						

## 1. ~ 12. (생략)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군사법원 <u>에</u> 보내야 한다.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 고등군사법원은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한다.

제420조(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이

사법원	<u>의</u>	<u>r</u>	H해서	<u>는</u>	
					- 등
<u>접전에</u> 					
	l2. (현행	]과 7	같음)		
제418조(				문의	송
부)					
		-고등	동법원	에	
제419조(					
동시)	① <u>고등</u>	'법원	<u> </u>		
②					
		고등	법원은	<u>-</u>	
 제420조(	ᅕᆝᆺᄼᆝᅌ	۱ <b>ا</b> ډ	1		
시[42U <del>조</del> (	अ उम् भाग		T)		

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 ② (생략)

- 제421조(답변서)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 없 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 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 서를 <u>고등군사법원에</u> 제출할 수 있다.
  - ③ 답변서를 받은 <u>고등군사법</u> 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제427조(조사범위) 고등군사법원 제427조(조사범위) 고등법

고등법원에
② (현행과 같음)
제421조(답변서) ①
고등법원은
- О н с с
②
고등법원에
· - 그 드 베 이 ㅇ
③ <u>고등법원은</u> -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1122-(02-11-12-0)
<u>고등법원은</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7조(조사버의) 고드버의으

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 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고등군사 🗷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 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 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제429조(사실의 조사) ① 고등군 저 사법원은 제427조와 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 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 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 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 종결 전에 조사를 신청하 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 정의 부당함 또는 사실의 오인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 명하는데 필요할 때에만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군판사가

② 제1항의 조사는 군판사가 하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군 판사는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 이나 군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

세	 428조(직권조사 사유) <u>고등법원</u> 은
-1Ì	
^	429조(사실의 조사) <u>고등법원은</u> 
	증명하는 <u>증명하는</u> <u>데</u>
	 <u>&lt;삭 제&gt;</u>

진다. 제435조(파기자판) 고등군사법원 제435조(파기자판) 고등법원은--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 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조 -고등법원에서-----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 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 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제3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고등법원은----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군사법원의 심판에서 판시 고등법원의-----

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제441조(준용규정)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3절공판에 관한 <u>규정(제379조는 제외한다)을</u> 준용한다. <<u>후단</u>신설>

<신\_ 설>

-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u>고</u> <u>등군사법원의</u> 판결에 <u>대하여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1. ~ 5. (생략)
  - 6.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7. (생략)

제443조(비약적 상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

제441조(준용규정) <u>①</u>
<u>규정을</u>
<u>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u>
으로, "재판관"은 "법관"으로,
"군판사"는 "판사"로 본다.
②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항소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u>고</u>
<u>등법원의대해서는</u>
<u>.</u>
1. ~ 5.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7. (현행과 같음)
제443조(비약적 상고) ①
군사법원의

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 1. <u>보통군사법원이</u> 인정한 사실 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후 형
   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 3. <u>보통군사법원에</u>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 ② (생략)

- 제449조(파기이송·환송) ① 제44
  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가 있음을 이유로 <u>보통군사법</u>
  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
  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
  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u>군사</u>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 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

1. 군사법원이
2. <u>군사법원의</u>
3. 군사법원에
② (현행과 같음)
제449조(파기이송・환송) ①
<u></u> 원심판결을
②
원심법
<u>원에</u>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록과 증거물을 <u>원심군사법원에</u>	<u>원심법원에</u>
돌려보내야 한다.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
정) ① (생 략)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2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	
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	
견서를 첨부하여 <u>항고군사법원</u>	<u>항고법원에</u>
<u>에</u> 보내야 한다.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	
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	
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u>항</u>
항고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	고법원은
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u>항고법원에</u>
② 항고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② <u>항고법원은</u>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	
다.	<u>.</u>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3
항고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	<u>항고법원이</u>

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 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 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 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군사법 -----항고법원은--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 여야 한다. 제464조(재항고) 항고군사법원이 제464조(재항고) 항고법원이나 고 등법원의----대해서는----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 하여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66조(준항고) 군검사나 군사법 제466조(준항고) ------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 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 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 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 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부대를 <u>관할하는</u> 군사법원에 그 처분 찰부에 대응하는-----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제469조(재심이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 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 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 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군검 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 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 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 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 관, 법관, 군검사, 검사, 군사 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이 나 군사법원이 그 사유를 알 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제 원판결을 한 <u>대법원 또는 군사</u> 법원이 관할한다. <u>다만</u>, 국방부 직할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u>.</u>
1. ~ 6. (현행과 같음)
7
군사법원
<u>이나 상소법원이</u>
<u>.</u>
472조(재심의 관할)
군사법원이나 상
<u></u> 소법원이 <단서 삭
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각 군 관하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
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80조(사실조사) ① 재심청구를 받은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 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 령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 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 게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생 략)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 의 결정) ① 항소기각의 확정 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 구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
	-
	-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칠	L
<u>부의</u>	-
	-
<u>.</u>	
제480조(사실조사) ①	-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은	-
	-
	_
	_
	_
	_
② (현행과 같음)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	_
의 결정) ①	-
	-
	-
	-

재심판결을 하면 <u>고등군사법원</u> 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 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이 재심 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88조(재심의 심판) ① 재심개 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 여는 제485조의 경우 외에는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은 그 심 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 다.

# ②・③ (생략)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법에 따른 <u>대법원의</u>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할수있다.

<u>고등법원은</u> -
,
②
거 ( 세 - 제 1 시 시
<u>경우에 제1심의</u>
<u>군사법원고등법</u>
<u>원이</u>
 제488조(재심의 심판) ①
~~400도(제합기 합킨) ①
느 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은
<u> </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상소법원의
·.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제498조(파기의 판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u>판결이</u> 법령을 위반한 경우	1. <u>원판결이</u>
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	
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u>불리할</u> 때에는	<u>불이익한</u>
원판결을 파기하고 <u>피고사건</u>	<u>피고사건에</u>
<u>을</u> 다시 <u>판결하기 위하여 고</u>	<u>대하여</u>
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	
<u>송한다</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99조(고등군사법원의 판결) 환	<u>&lt;삭 제&gt;</u>
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	
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	
의 해석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	
<u>야 한다.</u>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	제500조(판결의 효력)
호 <u>단서 및 제499조에</u> 따른 판	<u>단서에</u>
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	
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	
지 아니한다.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
는 사건) ① 보통군사법원은	는 사건) ① <u>군사법원은</u>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	
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	

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보 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 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 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 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 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u>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u> 승인을 받아 관할 <u>보통군사법원에</u> 청구한다.

## ②・③ (생 략)

- 제501조의33(확인조치 규정의 적 용 배제) 이 장의 즉결심판에 는 제379조의 확인조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03조(집행 지휘) ① 재판의 집 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② (현행과 같음)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군
사법원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u>군 참모총장의</u>
<u>군사법원에</u>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03조(집행 지휘) ①

군사법원에 |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가 지휘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 사법원이나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보통군사법원 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에 대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가 지휘 응하는 보통검찰부의-----하다. ③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서 그 신분 취득 전에 법원에 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 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따라 군검사가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판결서 등본을 관할 군 -----군사법원에 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둘 이상 |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외에

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군검사는 <u>소속 부대의 장</u>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7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 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 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 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 지한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 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는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지 정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한다.

# ②·③ (생 략)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지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u>국방부장관</u>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
군사법원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군검
찰부의
<u>국방부장관이</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

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u>군사법</u> 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 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 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1. ~ 7. (생략)
-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u>부대의</u>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아
  니한 때에 군검사는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 의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해당 군검사 소속 <u>부대</u> 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③ (생 략)
-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① 제5 34조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
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1 7 /위레기 기수)
1. ~ 7. (현행과 같음) ②
④ 검찰단의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검찰
<u> </u>
<u>- '</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5조(전시 군사법원 등의 설
<u>치)</u>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 사법(司法)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9조 및 제10
조에도 불구하고 고등군사법원

② 제1항의 확인은 해당 소송 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형 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36조(준용) 군사법원에서의 국 | 제536조(준용) 군사법원에서의 국 선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통 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

- 과 보통군사법원을 별도로 설 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검 <u>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u>하여 제 36조에도 불구하고 고등검찰부 와 보통검찰부를 별도로 설치 하여 운영할----.
  - ③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제1항 에 따른 고등군사법원과 보통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할하 는 관할관을 둘 수 있다.
  - ④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두는 고 등군사법원 · 보통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심 판절차와 고등검찰부와 보통검 찰부의 조직, 권한 및 수사 절 차, 관할관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선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통 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